

제 4장 재무회계

제 23조(적용)

1. 본 시설의 재무회계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에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설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연도 운영에 대한 재정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군구에 보고한다.
3. 시설 대표자는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를 확정한다.
4. 매년 1월 이내 본 시설의 사업예산계획 및 사업지출내역을 시, 군, 구에 보고하고, 예산변경 및 추가 시에 예산변경계획 및 추가예산계획을 작성한다.

제 5장 물품관리

제 24조(물품관리 및 폐기)

1. 본 시설의 물품 구매 관리는 해당 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검토한 후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후 물품 구매 관리를 하도록 한다.
2. 단일 종목이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에는 두 개 이상 업체의 비교 견적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물품관리는 별도의 물품관리자가 물품 출·납대장에 의하여 투명하게 보관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설의 물품폐기는 물품관리 담당자 요청에 의하여 시설장의 승인에 따라 폐기한다.
5. 모든 소모성물품은 사용자를 기록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물품에 따라 출고 직원이 기록되어야 하며, 확인시점의 잔여물품이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 6장 운영

제2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괴산군청에 신고한 29명으로 한다.
2. 입소대상

가)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중 급여내용이 시설급여인 자, 긴급보호를 요하는 등급외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나) 상기 가)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3. 모집방법

입소 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제2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의 입소계약은 이용자 및 시설의 상호 일반적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등급판정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시설(재가)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재등급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계약해지는 7일 전 계약해지를 본 시설에 방문 및 유·무선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의 특수한 사유와 제 11조의 내용에 의하여 본 시설이 입소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최소 2주전 계약해지내용을 통보하고 본 시설은 퇴소조치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가) 시설이 폐쇄, 이사로 인한 운영의 일시적 중단인 경우

나) 운영시설이 법규위반으로 폐쇄조치 및 영업정지인 경우

다) 직원에게 중대한 해를 가한 경우

3.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제29조의 이용부담비 표와 같이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이 자동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4. 별도 비용으로 규정된 입소보증금은 없다.

5. 기타 운영규정 제 9조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계약내용은 이용계약서 사항을 따른다.

제27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입소어르신)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설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 (단, 2회 이상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다) 시설에서 개인이 애완동물을 사육하거나 동행할 수 없음

라)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마) 그 밖에 시설 규정 및 안전규칙을 이향하여야 함

3.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마)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함.

제 28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다만 입소자나 보조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한(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제 29조(이용료 및 비용의 조정절차)

1. 다음 각 호는 이용비용이 별도의 운영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없이 변경 가능하다.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료 중 비급여비용의 조정할 경우 운영위원회 동의절차와 보호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비급여비용의 이용료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2022년도 1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구 분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일 반 (20%)		경 감 (12%)	경 감 (8%)
		현행	'22.1.1부터	'22.1.1부터	'22.1.1부터
본인 부담금	1등급(74,850원)	431,400	449,100	269,460	179,640
	2등급(69,450원)	400,260	416,700	250,020	166,680
	3~4등급(64,040원)	369,120	384,240	230,540	153,690
비 급 여	식재료비	225,000 1일:1식2,500*3회=7,500		225,000 1일:1식2,500*3회=7,500	225,000 1일:1식2,500*3회=7,500
합 계	1등급	656,400	674,100	494,460	404,640
	2등급	625,260	641,700	475,020	391,680
	3~4등급	594,120	609,240	455,540	378,690

3. 비급여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일 식대비용은 ₩7,500원(1식 ₩2,500)
- 나) 이.미용비용은 봉사 및 무료 또는 수급자가 요구시에는 실비로 한다.